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3기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담당부서 : 경영전략본부 정책혁신부

Tel : 061)900-2150 | 집필자 : 제3기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 I. 개요
- II.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내용
- III. 주요 활동
- IV. 성과와 전망

---

# 목 차

---

I. 개요	3
1. 활동 배경과 목표	3
2. 구성과 임기	4
II.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내용	5
1. 활동 주제별 경과	5
2. 성평등소위 회차별 논의 내용	5
III. 주요 활동	7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 제정 추진	7
가. 배경 및 취지	7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8
다. 현장 의견	9
라. 향후 과제	15
2.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16
가. 배경 및 취지	16
나. 추진 경과	17
다. 연구 성과	18
라. 향후 과제	20
3. 문화예술 현장의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토론	21
가.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11 <창작과정 속 재현윤리의 의미와 과제>	21
나.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	24
다. 라운드테이블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화예술 생태계>	28
IV. 성과와 전망	32
1. 활동 성과	32
2. 전망과 과제	33

---

## 표 목차

---

[표 2-1]	.....	5
---------	-------	---

---

## 그림 목차

---

[그림 3-1]	.....	16
----------	-------	----

---

# 1. 개요

---

## 1. 활동 배경과 목표

### ■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한 예술현장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 소위원회 신설

-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은 예술 활동현장이 젠더화된 공간임을 폭로했으며, 예술의 특수성이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권한의 표현으로 인식되던 문제들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구조의 결과였음을 드러냈음.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대상 지원정책을 만들고 창작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성평등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음. 2019년부터 예술위는 예술 현장의 성평등 요구를 예술정책과 관련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이하 성평등소위)를 상설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음

### ■ 제1기-2기('20~'21년 상반기) 성평등소위 주요 활동과 과제

- 제1기와 제2기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이하 성평등소위)는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와 지원서 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역대 지원자와 선정자 성비, 리더십과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서 성불평등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함
-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과제를 제안함
  - 첫째, 매년 성평등 지표를 통한 장르별 여성 참여율을 검토해 공개할 것
  - 둘째,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지원사업에서 평등한 참여뿐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과 영향력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예술생태계에 맞는 평가 지표를 개발할 것
  - 셋째 성평등한 창작환경과 창작물에 대한 인식 확산 방안을 모색할 것
- 일례로 평가 지표의 경우 격년으로 진행되는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지원사업 내 불평등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부연함

### ■ 제3기('21년 하반기~'22년 현재) 성평등소위 활동의 전제

- 제3기 성평등소위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설계와 성희롱·성폭력을 분리된 의제로 보지 않고, 여성의 예술 활동/일이 위계화되는 권력을 분석하고 연령, 지역 등의 사회적 차별 요인을 교차적으로 살피고자 하였음. 젠더 불평등이 발생하는 중첩된 구조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예술위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음. 특히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예술 현장에서 지원기관의 원칙과 정책의 파급력이 상당한 점, 성평등 관점의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제도 마련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 제3기 성평등소위 주요 활동 목표

- 제3기 성평등소위는 첫째, 성희롱·성폭력으로 여성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이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차별과 인권

침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으로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를 기획함. 이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중첩된 차별 구조에서 발생하기에 예술생태계를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정책이 곧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였음. 또한 미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소극적 결과를 넘어서서 20·30대 여성예술인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예술생태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자 함

- 둘째,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 제정을 목표로 삼음. 소위원회에서 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규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술단체, 유관기관, 예술인 대상 지역간담회와 아르코 대토론회 추진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해 나감. 문화예술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동시에 예술위 조직의 성평등 관점이 부재할 때 피해 경험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접근과 해석에 따른 재발 방지방안 도출이 불가능함을 강조함.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가 피해자 지원뿐만이 아닌 예술 생태계 전반의 위계 문화를 해체하는 과정이 되도록 촉진하는 예술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실천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

## 2. 구성과 임기

### ■ 위원 구성

구분	위원 명단
외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li> <li>• 송 원 (배우,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li> <li>• 이 산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마임배우)</li> <li>• 홍교훈 (전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li> </ul>
내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진희 (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평등소위 위원장)</li> <li>• 정정숙 (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li> </ul>

- 성평등소위 간사: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 활동 임기

2021년 8월 20일 - 2022년 5월 5일(위촉장 임기)

\* 연중 8기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일정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제17차 회의(22.08.16) 이후 활동 종료

## II .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내용

### 1. 활동 주제별 경과

■ 제3기 성평등소위는 2021년 9월 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총 17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활동 주제별 진행 경과 및 내용

활동 주제1		활동 주제2		활동 주제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이하 규정) 제정 추진		예술지원정책 내 성평등 관점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예술 현장 소통	
4차 회의 (‘21.10.27)	○ 규정에 대한 검토	3차 회의 (‘21.10.08)	○ 연구 진행 심층논의	4-6차 회의 (‘21.10~12)	○ ‘아르코 대토론회’ 준비 및 개최 → 재현윤리 논의
4-6차 회의 (‘21.10~12)	○ ‘아르코 대토론회’ 준비 및 개최 → 규정 제정안 논의	5-7차 회의 (21.11~22.01)	○ 연구 진행 공유/검토 ○ 연구 보완방안 논의	11차 회의 (‘22.03.21)	○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련 문체부 미팅 결과 보고
7-9차 회의 (‘22.01~02)	○ 관련 진행사항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10-11차 회의 (‘22.03.)	○ 규정안 관련 지역 간담회 준비 및 개최 → 지역 의견 수렴	8차 회의 (‘22.02.09)	○ 연구 최종 보고	10-13차 회의 (‘22.03~05)	○ ‘ <del>아르코</del> 대토론회 준비 및 개최’ → 연구 보고서와 규정안 관련 논의 및 공론화

### 2. 성평등소위 회차별 논의 내용

■ 회차에 따른 세부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 성평등소위 회의 개최 현황 및 논의 안건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 내용
2021.09.01	1차 정기회의	○ 신임 민간위원 위촉 : 내부 1인, 외부 4인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이하 성평등소위) 활동 계획(안) 논의
2021.09.23	2차 정기회의	○ 20·30대 여성 예술인 실태조사(심층탐구)에 대한 의견 논의 ○ 예술위원회 공모사업 내 성평등 비율 점검

2021.10.08	3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추진방향, 쟁점사항 등 심층논의</li> </ul>
2021.10.27	4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에 대한 검토</li> <li>○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이하 아르코 대토론회) 세션 주제 선정 논의</li> </ul>
2021.11.15	5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진행 공유 및 검토</li> <li>○ 아르코 대토론회 세션 준비사항 논의</li> </ul>
2021.12.14	6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진행사항 공유 및 점검</li> <li>○ 아르코 대토론회 세션 추진사항 공유</li> </ul>
2022.01.11	7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진행내용에 대한 보완·개선방향 논의</li> <li>○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이하 성희롱·성폭력 규정) 관련 위원회 12월 전체회의 논의 내용 공유</li> </ul>
2022.02.09	8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진행사항 최종 보고 및 피드백 수렴</li> <li>○ 성희롱·성폭력 규정(안) 관련 진행사항 공유 및 향후 일정 논의</li> </ul>
2022.02.28	9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결론 및 정책제언 공유, 후속 실행방안 논의</li> <li>○ 성희롱·성폭력 규정(안) 전후대조표 공유 및 후속 계획 논의</li> <li>○ 성평등소위상반기 활동안 논의</li> </ul>
2022.03.15	10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규정 신규(안) 관련 지역 간담회 준비 및 진행사항 공유</li> <li>○ 성평등소위 후속 활동(공론화: 라운드테이블 등) 진행계획 논의</li> </ul>
2022.03.31	11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관련 여성, 청년 예술인 참여보장 조항 개정을 위한 진행 현안 공유 및 논의</li> <li>○ 성희롱·성폭력 규정(안) 관련 지역 간담회 토론 내용 및 '예술인의 자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문체부 면담 결과공유 및 논의</li> <li>○ 라운드테이블 개최 일정 및 패널 구성안 협의</li> </ul>
2022.04.14	12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규정 제정 관련 후속 일정 공유</li> <li>○ 라운드테이블 개최 계획(안) 세부 구성내용 논의</li> </ul>
2022.05.06	13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규정 관련 위원회 4월 전체회의 논의 내용 공유</li> <li>○ 라운드테이블 토론 주제 및 내용 논의</li> </ul>
2022.05.30	14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평가 및 소회 논의</li> <li>○ 성평등소위 활동 마무리 방안 논의</li> </ul>
2022.06.28	15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기 성평등소위 활동보고서 작성 초안 공유, 세부내용 작성 방안 협의</li> </ul>
2022.07.14	16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기 성평등소위 활동보고서 세부 작성안 검토 의견 논의</li> <li>○ 제3기 성평등소위 활동보고서 중 &lt;성과와 전망 및 과제&gt; 내용 상세 논의</li> </ul>
2022.08.16	17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기 성평등소위 활동보고서 최종안 검토 및 마무리</li> </ul>

---

### Ⅲ. 주요 활동

---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 제정 추진

### 가. 배경 및 취지

#### ■ 성희롱·성폭력 가해 예술인 공공지원 배제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예술 현장의 요구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의무화(2021.1.5.)
- 예술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조치 명시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 ■ 인권 영향평가와 공모사업 운영 방안 등에서 설정한 성평등 목표 달성의 필요성

- 예술위 2020 인권경영 비전에 인권침해 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인권침해 신고 이슈 분석, 관련 법제도 내부 규정 이행 환경 분석 계획을 명시함
- 2022년 공모사업 운영 방향 핵심 키워드에 ‘고용 + 인권보호를 위한 차별금지’ 명시, 공모 선정사업 참여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장치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 신설과 피해상담 창구 개설 예정임을 공고함

#### ■ 예술위의 공식 사건 처리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조사업 관련 성폭력 사안 처리 경험을 통해 발견한 한계

- 성폭력과 2차 피해 사건 제보 시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 열람과 가해자 소속 단체의 의견 청취 내용을 근거로 예술위가 해당 단체의 지원금 교부 중지 또는 보조사업 선정 취소를 의결
- 조사 등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 절차가 아니기에 피해자 및 조력인의 2차 피해와 지원부서 실무자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됨. 보조사업 관련 제재 조치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 마련의 필요성 대두

#### ■ 예술위원회 입장문으로 발표된 대응체계 및 공식 절차 마련 약속의 분명한 이행 필요

- 예술위는 2020.8.3에 발표된 「Y작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예술위 입장」에서 수사기소가 되지 않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2021.3.26. 「Y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 조치경과 및 후속 추진 계획」에서는 예술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

호 제2호의 “국가기관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동 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실현,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의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의무를 가짐을 스스로 밝히며 관련 기관과 현장에 축적된 사건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경험과 역량을 적극 참조하여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를 만들고, 성주류화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약속한 대응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법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예방사업-사건조사-피해자지원-가해자징계-후속조치’를 포괄한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있는 규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규정은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내 사건신고 창구 개설, 전담인력 확보, 예술위 업무 협력 등 실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3.26. 「Y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 조치경과 및 후속 추진 계획」, 예술위 홈페이지)

##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기간	주요 내용
2020.0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작가 성희롱 사건 자문회의</li> <li>○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초안 제시</li> </ul>
20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위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TF 활동</li> <li>○ 성평등한 예술생태계를 형성/촉진하는 원칙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규정 전반 검토</li> <li>○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조사권 명시 필요성 강조</li> <li>○ 성희롱·성폭력 사건 지원과 처리에 관한 예술위의 원칙과 지원구조 구축 제안</li> </ul>
2020.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세션4 &lt;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전과 과제&gt;</li> <li>○ 문화예술계 성폭력 발생 구조와 특성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예술위 성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관점과 역할 제안.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예술위 지원체계 확보와 문체부 통합시스템 구축 ② 성폭력 인식 개선 촉진사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③ 성폭력 신고상담창구 개설 ④ 실태조사 실시 등이 있음</li> </ul>
2021.03-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위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TF 운영</li> <li>○ 성희롱·성폭력 대응 규정 마련을 위한 방향과 원칙 논의</li> </ul>
2020.0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 연구팀 문예진흥기금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안과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제출</li> </ul>
2021.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총괄부 규정에 관한 예술위 내부 심의, 법률자문</li> <li>○ 성평등소위 법률 자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li> </ul>
20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소위 자문회의 진행</li> <li>○ 관련 기관, 현장 단체 자문회의 후 검토 의견 제출</li> </ul>
2021.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제2회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세션12 &lt;예술위의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gt;</li> <li>○ 보조사업 관련 성희롱·성폭력을 바라보는 예술위원회의 문제 인식 정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와 인권경영지침에 기반한 예술위원회 적용 가능성, 자치규약 제정 등 예술현장의 성폭력 대응 활동 등</li> </ul>
2022.0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소위 검토 의견 제출</li> <li>○ 성평등소위안과 사무처안의 조문 비교표 제출</li> </ul>
202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소위 지역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대구, 부산, 전주)</li> </ul>

## 다. 현장 의견

### ■ 현장 예술인 자문회의

○ 2021.11.13.(토) 15:00~17:00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개최

○ 참석자(가나다 순) :

- 강윤지(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극단Y 연출)
- 이도원(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기획자)
- 이 산(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장혜진(무용인희망연대 오롯, 혜진장댄스 대표)

○ 핵심 내용

- 피해 예술인의 활동 보장을 위해 가해자 이해관계인의 사건 심의위원 위촉, 대표자 명의 변경 후 징계 회피, 지원금 환수로 인해 가해자 외의 소속 단체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 등의 상황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학교 졸업 직후 등 진입단계 예술인의 피해율이 높는데, 경력과 발언권 어느 정도 확보한 뒤 신고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사건 처리 기간은 부족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단체 내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사인력 풀, 사건 처리 과정 컨설팅, 피해자 공간 분리 등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과 같은 다각화된 지원책을 고안할 필요

○ 주요 발언 요약

- 예술위가 사건 조사인단 풀을 구축해야 함. 뉴욕 DTW극장은 5단계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①당사자 ②제삼자 ③관련 전문가(변호인은 아닌) 단계 ④법적 자문이 가능한 사람의 중재 ⑤법원을 거침. 예술위 임직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여 적합한 개입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함
- 예술계의 인간관계 네트워크 섬세하게 겹쳐져 있음.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도 이에 준하는 (업무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하거나 가까운) 관계가 다수임. (가해자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원회 구성을 알 수 있는지, 조사 중간에 기피하고 싶은 위원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려해야 함
- 피신고인이 회피해서 시간 끄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처리 기간 지연의 정당한 이유를 시행 세칙에 항목으로 명시할 필요 있음
- 가해자가 성폭력 불인정시 신고인의 이의 제기 절차 가능한지 확인 필요함
- 심의위원 면접심사를 연 1회 모니터링 하는데 면접심사 성희롱 방지뿐만 아니라 갑질 등 모니터링도 필요함. 심사위원이 문제적인 발언을 해도 예술위 직원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동조할 때 면접자는 더 압박을 느낌
- 면접 심사뿐 아니라 보조사업 심의위원 전원이 사전에 성평등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서약서 사인만 하는 것은 요식행위임. 서류심사 시 불균형한 관점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 규정과는 별개의 채널로 최소한의 교육 장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 공연예술계에서는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업계에 갓 진입한 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고, 발언권을 가지기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다수임.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5년은 짧은 기간일 수 있음. 5년 경과 후 신고하는 이들은 예술위 시스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인정받는 차원의 기대일 것. 폭넓은 기간이 필요함
- 제재 및 권고 조항에서 권고 후 이행 경과 보고를 의무화시켜야 함. 대표자 명의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경우에 대표자만을 제재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제재 범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세칙에서 논의해야 함
  - 사건이 발생해도 단체들이 은폐하려는 이유는 보조금 환수로 징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 두렵고 조치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질 수 있음. 예술위에 요청하면 어떤 징벌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의 막연함. 규정 제정 후 설명 자료의 제공 및 홍보가 반드시 필요.
  - 규정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사건처리 컨설팅. 예술위가 행정 집행자로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함께 환경을 바꾸고 체질 개선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 충분한 내부적 교육 필요
  - 비용처리 가능 범위의 협소함에 따라 이 범위를 늘려서 기재하였으면 함. 창작공간 사용의 경우 공간분리가 필요할 때 예술위가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거나. 해당 사업이 본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를 하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의 문제. 예산 집행의 범위도 폭넓게 적용해야 함
  -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공연이 취소되거나. 조치에 따라 공연취소될 수 있으나 가해자 외 구성원에겐 페이를 보장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함

■ 관련 기관 자문회의

○ 2021.11.23.(화) 19:00~21:00,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개최

○ 참석자(가나다 순):

- 김미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 본부장)
- 이 산(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이하경(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정정숙(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

○ 핵심 내용

- 실효성 있는 징계가 불가능한 업무상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 마련할 수 있으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하여 예술위가 공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가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음. 예술위의 권고가 현장 예술단체와 관련 기관에 발휘하는 영향력이 있음
- 예술위는 조사권과 판단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규정에 의해 확보 가능. 규정 없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복잡해지고 소송에 방어하기 어려움. 법률적 검토는 사건마다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해야 함

○ 주요 발언 요약

- 예술위도 공공기관이라 업무 관련성 없는 업무 관계를 찾기 어려움. 예술위 보조금을 받았을 때 업무 관련성이 생김. 예를 들어 공공기관 물품 납품 업체 A라는 사람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에 성희롱하면 직원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는 해야 함. A에게 직접 제재 조치를 할 권한은 없으나 해당 업체에서 해야 함.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서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고 업체를 통해 권고하는 방법이 있음

- 기관의 영향력이 주된 힘. 예술위 공공지원사업은 각 지역 전국 문화재단 사업 통틀어도 가장 광범위하고, 액수가 크고, 영향력이 있음. 예술 현장에서 이 권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긴 어려움
- 예술위에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타당한지 행위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방어 문제일 것. 아르떼는 법무 지원실이 있지만, 예술위에는 별도 법무 전담 부서가 없음. 예술위 감사실과 사무처는 조사권과 판단권 마련 및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이런 배경이 현재 적극적인 검토를 어렵게 함. 그러나 예술위와 직원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규정 없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복잡해지고 소송에 대해 대응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움
- 예술위 지원사업에서 사전 배제는 안 되지만 선정 취소는 가능함.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서 시도할 수 있음. 문체부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들어와야 처리가 가능함. 현재는 누군가가 선정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가능한 상황.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
- 가해자 제재 어려워도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은 만들 수 있음. 이 규정이 있으면 권고와 제재 및 감시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피해자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동료로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가 드러나면 좋겠음. 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예술위가 공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 가해자 제재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 ■ 지역간담회

- 예술위 규정안 의결을 앞두고 대구, 전주, 부산에서 예술인, 재단 등 예술지원기관, 여성성폭력피해지원 기관 실무자를 초청하여 지역간담회를 개최
- 기존 성폭력 대응 TF가 조사연구를 통해 준비하고 제시한 규정안과 사무처에서 제시한 규정안을 바탕으로, 규정안 보완 방향, 지역 예술현장에서 체감하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어려움,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위한 예술위의 역할에 대해 의견 수렴

#### ① 대구지역 간담회

- 일시 : 2022.3.17.(목) 오후 2시
- 장소 : 대구 차방책방
- 참석자(가나다 순):
  - 김인숙(대구여성기획자모임 WID)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서민기(생활연주자)
  - 이 산(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 이유미(인디053)
  -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정준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 최윤경(여성기획자모임 어나더스)
  - 하주은(시각예술작가)

○ 핵심 내용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어려움. 가해자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단체가 해산되어도 다른 경로로 활동 지속 가능.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개로 가해자 소속 단체 존속을 원할 때 신고 꺼릴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이나 해당 사례에 대한 아카이빙 필요. 신고 고려할 때 도움이 되고 예방효과도 있음. 문체부가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서 규정 적용하면 파급력 높을 것
- 지역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목소리 내는 기회가 필요. 고발이 더 어렵고 서울에서 활동 배제 조치 받고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경우의 사례가 다수 있음

○ 주요 발언 요약

- 성폭력 사안으로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 연락했을 때 예술인복지재단 쪽으로 연결받은 적 있고, 거기서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건지 물어봄. 당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였는데 사법 처리 여부를 먼저 물어보아 다소 당혹스러웠음
- 피해자가 자신의 힘보다는 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향. 다른 기관 연결받을 때마다 상황 말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가이드 라인이나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규정이 있어도 기획자 등 소수만 인지할 수 있음. 사업과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다른 관계로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설명하게 되기도 함. 공식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음
- 단체가 사건 후 바로 해산했을 때, 해산만으로 책임을 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프리랜서로든 새로운 조직을 만들든 계속 변형해서 활동함. 보조금 사업 범위 안에서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둘지 필요
- 단체의 보조금 압수하는 조치에 대해, 대표에게 성범죄 피해 있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개로 그 단체나 공간의 행보를 응원하고 싶을 때 공간의 존속이 위험해진다면 신고 꺼릴 수 있음
- 창작활동 안에서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관계에서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스태프까지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있음. 규정에 따른 절차 안내가 홍보되는 것 중요. 피해자가 어디에 말해야 되는가. 신고, 접수 창구나 절차가 구조화되고 눈에 보여야 함
- 지역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는 힘을 기르는 기회, 장치가 필요함
- 문체부가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빨리 성희롱 성폭력 규정이 작동되어야 함. 예를 들면 문화도시 사업에서만 운영해도 지역 기초 단위까지 파급될 수 있음
-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려고 할 때 노동, 예술 수행, 생활권이 박탈당하는 경험. 규정과 제도가 갖춰지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이 예술 활동의 현장에서 이렇게 제외당하지 않도록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음
- 사건 후속 조치 아카이빙되어서 볼 수 있었으면.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볼 수 있으면 신고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도 학습효과가 있을 것

② 전주지역 간담회

○ 일시 : 2022.3.22.(화) 오후 2시

○ 장소 : 전북 우진문화공간

○ 참석자(가나다 순):

- 모아름드리(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 문주현(책방 토닥토닥/전북문화관광재단 성평등위원회 외부위원)

- 박영준(전북문화관광재단 성평등위원회 외부위원)
- 송 원(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
- 신은혜(완주문화재단)
- 유상록(완주문화재단)
- 이 산(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최미향(문화예술기획 잇:다)
- 한하경(예술위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 황지영(전주시 인권담당관)

○ 핵심 내용

- '18년 성폭력 사건 고발 후 전라북도연극협회가 가해자를 제명하였고, 협회의 결정을 근거로 한국연극협회,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시청 등에 적극 요청하여 가해자 활동 배제가 가능했음. 지역연극협회의 조사·판단 절차가 있었기에 가능
- 지자체 인권 관련 부서들도 조사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님. 조사의 근거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장이 부서에 부여해주는 것.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
- 규정은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조사 권한, 고충상담원 인원도 명시 필요. 한 명 인원으로 불가능하고 외부 인원 위촉을 명시하는 등 상담 인원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상담을 못 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고 이후 조치 이행과 보고 기간 설정도 필요

○ 주요 발언 요약

- 전라북도연극협회는 가해자 제명 후 협회 결정을 근거로 한국연극협회,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시청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가해자 활동 배제가 가능했음. 지역연극협회에서 조사, 판단 절차 있었기에 가능. 이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성폭력 사례접수 창구 열었으나 도움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없었기에 접수 건이 없었음. 예술위나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조력자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으면 함.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해자 중에서는 지원사업 서류상에 이름만 없으면 된다고 비웃으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음
- 기본적으로 조사 권한이 법에 명시된 곳은 사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일 텐데 지자체에 만들어진 인권 관련 부서들이 조사하는 것의 기본 근거는 헌법임.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장이 부서에 부여해주는 것. 권한을 행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 규칙이나 훈령으로 직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사람들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임. 예술위가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성차별적 문제를 일으켜서 환경을 악화시킬 때 두고 보지 않으며, 조사를 하고 과정을 밟아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해야함
- 좁은 지역사회에서 예술인이 성폭력을 이야기할 경우 작업을 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문제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법부가 아니면 단체가 자정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체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규정이 있고 활용할 수 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인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내가 보호받고 있고 예술계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감각이 생길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관련 지침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크고, 지침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 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자와 관계된 규정이 지역문화재단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훨씬 촘촘해질 것. 사업비 받는 과정에서 성희롱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겠다.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규정이어야. 명확하게 조사 권한을 넣고 2차 피해 방지와 고충상담원 인원도 명시 필요. 인원이 한두 명인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외부 고충상담원 위촉할 수 있다고 두고, 외부 인원을 명시하여 고충상담원 인원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상담을 못하게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은 성별 비율 등 어떤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할 것인지도 명시가 되면 좋겠다. 내부 위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사안의 경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권고 이후의 조치가 몇 개월 내 보고하는 체계 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봄. 징계, 제재, 사업비 주지 않는 권한 행사하는 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센터에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운영사업,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수행.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현장에서 봄. 예술활동증명이 5-6개월 걸리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센터에 와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 ③ 부산지역 간담회

○ 일시 : 2022.3.23.(수) 오후2시

○ 장소 : 부산문화재단

○ 참석자(가나다 순):

- 문창현(감독, 다큐멘터리공동창작집단 오지필름)
- 송수경(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 엄지영(연극배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전문강사)
- 이 산(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 이재희(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이지숙(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제작 프로듀서)
-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정준하(예술위 지원총괄부장)
- 주유신(부산문화재단 성평등분과 위원)

○ 핵심 내용

- 문화예술계 보조금 사업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관련 제도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 실질적인 제재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
- 부산문화재단은 단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원 중단한다는 협약서 조항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재단에서 사업중단 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지침을 적용하여 지원금 선정 심의 위원과 분과위원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심의하고 지원금 환수와 3년간 지원 배제 의결함
- 신고창구와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현장 홍보, 2차 가해의 사건 처리 필요. 고충상담업무는 한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독립적인 팀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이 이상적임

○ 주요 발언 요약

- 문화예술계 보조금 사업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관련 제도가 없는 점이 심각한 문제
- 부산문화재단과 부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사건이 있는데, 규정이 없어 심의 결과를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실질적인 제재 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단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원 중단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원금을 심의한 심의위원과 절차를 만들어서 지원금 환수하고 3년간 지원배제를 의결함. 단체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불이익 있다는 조항, 보조금 지급할 때 쓰는 협약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재단에서 사업중단할 수 있다는 지침 등 3가지를 연결하여 적용하였음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 청해야 할지 모름. 계약서처럼 반복해서 인식시키고 강제성으로 부담 느껴야 보편화될 것. 예술위 규정 안에 절차가 있으면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심의로 공식화된 결과를 토대로 다른 곳에서도 입증 가능
- 법적 판단 받으면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지만 판결이 있어도 문화예술계 안에서 가해 사실 모르기도 함. 가해자가 또 작품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면 참여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됨.
- 가해자가 명망이 있거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많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거나, 피해 반복되고 2차 가해 만연. 구조적인 예방 위해 2차 가해 범위 명확히 하고 확장하는 것 필요
- 사건 심의 후 권고사항 지키고 있는지, 재발방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고충상담창구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접근성을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는 반드시 필요함. 전문 상담원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센터 설립이 이상적이라 생각
- 예술계 안의 피해구제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으로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므로 예술위 절차가 중요

## 라. 향후 과제

■ 보조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창구 설치 및 운영

■ 규정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구체화 후 예술 현장 의견 수렴과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확보 요청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협업구조 구축

○ 조사 기간 중 지원 중단 등 예술인 보호관 조사와 관련한 협조 사항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재정중단 조치 시행을 위한 협업방안과 지원사업 심의 시 신청자의 징계 여부를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2.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 가. 배경 및 취지

- 2016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위계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 의미 있는 변화임.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창작·노동과정에서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불평등 구조를 바꿔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활동의 주요 주체는 문화예술계에 갓 진입한 예술인으로, 문화예술계에서 창작 작업 및 관련 노동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20·30대 여성예술인<sup>1)</sup>)



[그림 3-1] 예술인활동증명 여성 예술인의 연령대별 분포 현황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문화예술계의 진입단계에 있는 20·30대 여성이 성희롱·성폭력, 성차별, 창작과정과 노동현장에서의 위계폭력 등 불평등 문제의 시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발생 후 개입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예술활동 환경과 예술계 구조 변화가 시급함을 그동안 강조해 왔음.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예술계의 착취와 폭력 문제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예술계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예술대학, 지원제도, 각종 공모, 등단방식과 노동환경, 의사결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기초통계자료와 진입단계에서의 불평등 경험 분석을 통해 20·30대 여성예술인 시각에서 바라본 예술계 진입구조와 불평등구조를 도출하며, 예술계 현장에서 작동되는 불평등구조의 개선 방향과 후속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 제안을 목표로 함

1) 예술활동증명 예술가 146,574명 중 54.1%는 여성 예술인이며, 이 중 20·30대는 53.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출처: (22.08.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활동증명 현황 검색 사이트, [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3.html](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3.html)

## 나. 추진 경과

### ■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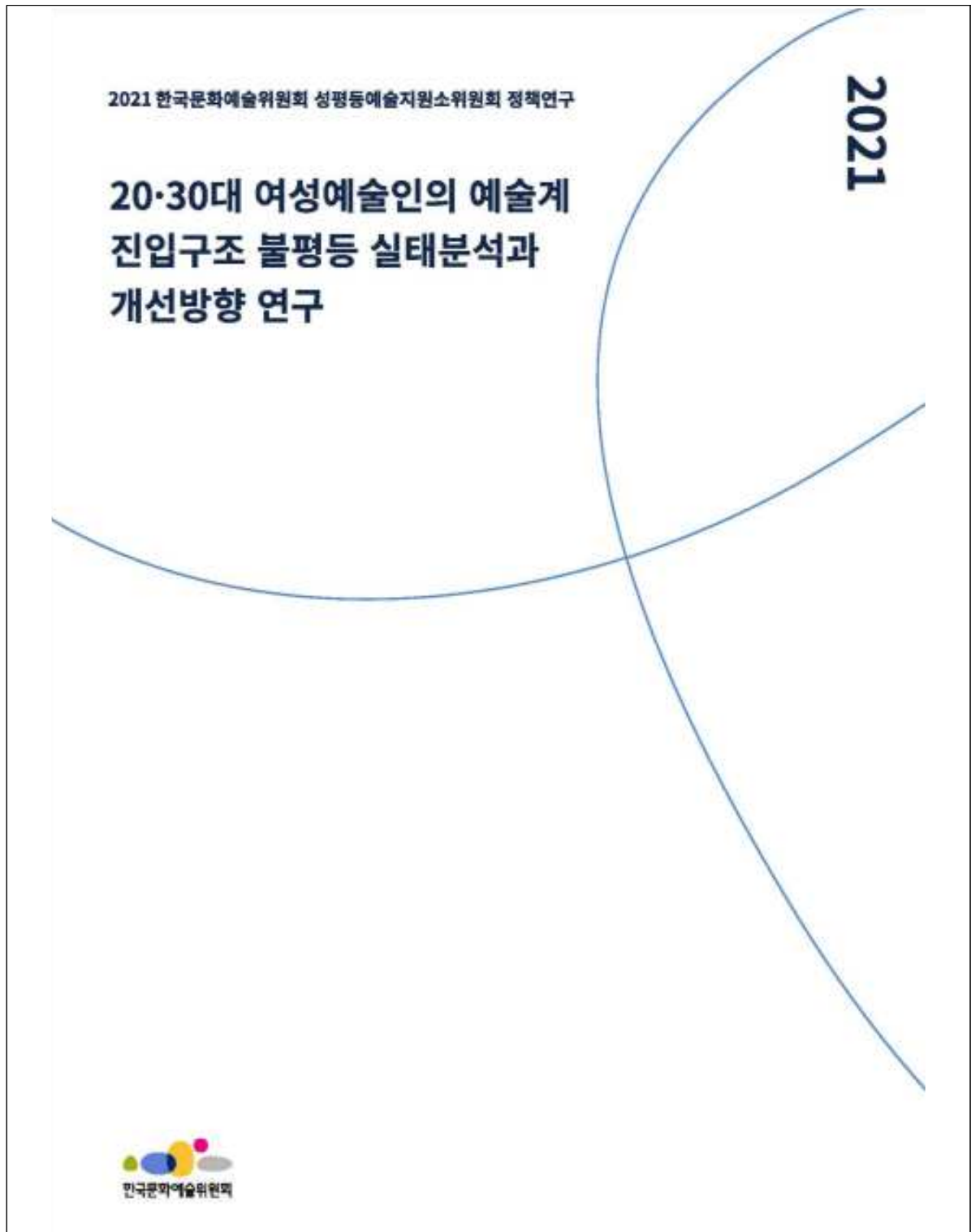
이름	소속
김지현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산(양현경)	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조규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전문사과정
홍교훈	전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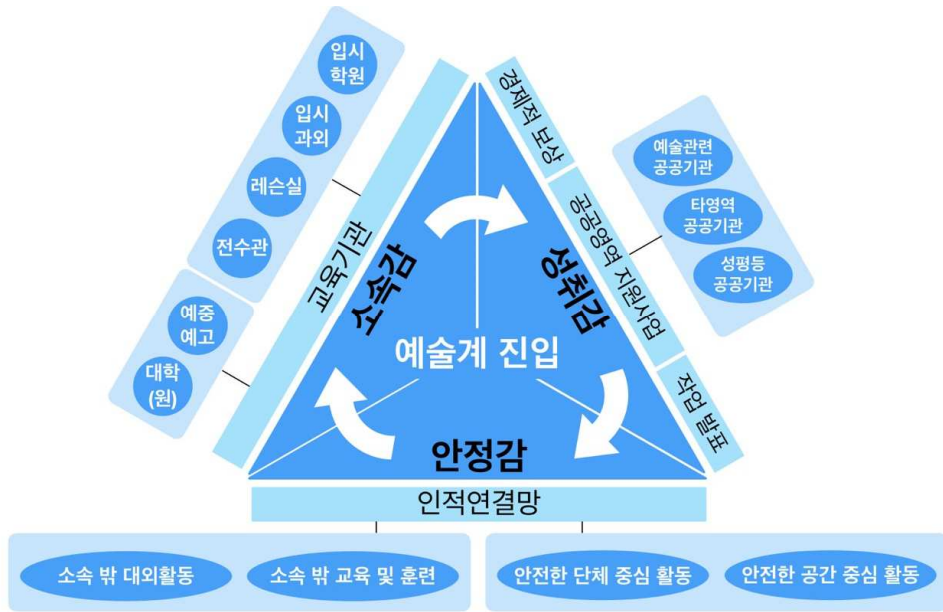
일시	추진내용
2021.09.16	○ 20·30대 여성예술인 예술계진입 불평등 구조 연구 필요성과 방향 논의
2021.10.01	○ 성소위 내 연구기획팀 구성하여 연구 계획서 초안 작성 및 논의
2021.10.28. ~12.26.	○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진행(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 ○ 연구단체: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성평등소위와 연구내용 공유 및 20·30대 여성예술인 인터뷰 분석 결과 논의 등 진행 ○ 성평등 분야 연구자, 문화예술정책 입안자와 성평등한 예술계 진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 진행
2022.05.09	○ 성평등소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연구결과 발표·토론 ○ 진행방식: 온라인 줌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 ○ 주제: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화예술 생태계」 - 젠더 관점으로 다시 보는 예술의 가치와 공공의 역할 토론 ○ 사회자: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발제자: 김지현(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산(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 작업실 이로 대표), 백소망(창작음악그룹 아마씨 동인) ○ 토론자: 신재(제로셋 프로젝트 연출), 송원(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전북여성 예술인연대 대표), 김영옥(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정창호(예술위 정책혁신부장), 황지영(전주시 인권담당관 인권옹호 팀장)

## 다.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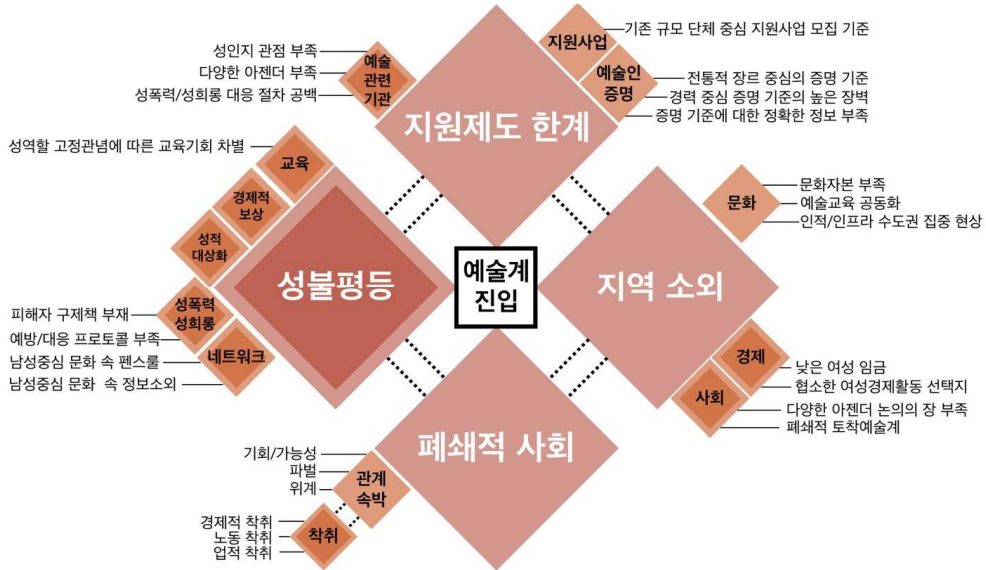
### ■ 연구보고서 표지



■ 20·30대 여성예술인 연구참여자 진입 경로 도출



■ 20·30대 여성예술인 연구참여자의 예술계 진입 불평등 구조 도출



■ 20·30대 여성예술인의 진입단계 불평등구조 개선 방향과 과제 제시<sup>2)</sup>

○ 기반 조성과 구조 개선

- 예술활동 자원 및 기회에 대한 평등 실현

2)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홍고훈 외(2021),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p.148-152. 참고

- 창작 결과 중심의 평가인정 기준 개선
- 예술교육훈련 기관의 구조 개선
- 예술계 구조를 형성하는 지원제도의 개선
- 다양한 가치와 의제가 공존하는 다층적인 예술활동 기반 조성
- 현실적 문제 대응조치 강화
  - 불평등 사각지대 20·30대 지역 여성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 예술계 진입 단계 위계폭력의 적극적인 대응
  -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책 마련과 적극적인 현장 적용 추진
- 관련 실태자료 확보
  - 20·30대 여성예술인 통계 확보

## 라. 향후 과제

### ■ 후속 연구

- 조사대상: 모든 성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예술인
- 모집단 구성: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
- 연구방법: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병행
- 연구내용: 성(젠더)·연령·경력(경험)·지역 차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 연령층 대상의 설문조사와 불평등 문제의 맥락 파악, 예술인·예술정책 입안 및 지원기관 관련자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여성예술인이 겪는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시

### 3. 문화예술현장의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토론

#### 가.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11.

〈창작과정 속 재현윤리의 의미와 과제: 페미니즘 서사창작자의 현장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2** 문화예술의 현재성 진단 **13:00~15:00**

**세션 11**  
**창작과정 속 재현윤리의 의미와 과제 - 페미니즘 서사창작자의 현장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오혜진 문학평론가  
페미니즘 서사창작자의 현장 연대 사례를 통해 예술계 내 '재현윤리'의 인식격차를 좁히고, 동시에 예술인이 고민해야 할 재현윤리의 방향과 의미, 방법과 과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발제**  
강윤지 극단 Y 연출  
도은 극작가  
강지이 독립영화 감독  
강유기람 다큐멘터리 감독

**이슈2** 세션11 | 창작과정 속 재현윤리의 의미와 과제 - 페미니즘 서사창작자의 현장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LIVE**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사회 | 오혜진  
문학평론가

-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13:00~15:00
- 장소 : 온라인 줌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
- 참여자(가나다순)

역할	참여자 및 소속
사회자	오혜진(문학평론가)
발제자	강유가람(다큐멘터리감독)
	강윤지(극단Y 연출)
	강지이(독립영화 감독)
	도 은(극작가)

■ 행사 목표

- 페미니즘 서사 창작자의 현장 연대사례를 통해 예술계 내 '재현윤리'의 인식격차를 좁히고, 동시대 예술인이 고민해야 할 재현윤리의 방향과 의미, 방법과 과제를 발견하고자 함

■ 기획 배경

-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서약서 의무화, 실태조사, 양성평등기본법 근거한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등의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반(反)성폭력 단체 결성,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 개발, 개별 단체의 규약 제정 등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관객의 성평등한 창작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특히 기존 예술작품 표현방식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재현 윤리'가 당면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페미니즘을 기존 작업에 새로운 사유방식으로 인식하고 작품의 안과 밖에 녹여내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노력과는 달리 여전히 폭력의 사실적 재현을 예술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문화가 예술계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
- 이에 페미니즘 서사창작자의 현장 연대사례를 통해 예술계 내 '재현 윤리'의 인식 격차를 좁히고, 동시대 예술인이 고민해야 할 재현윤리의 방향과 의미, 방법과 과제를 발견하는 토론회를 기획함

■ 핵심내용

- 작품이 피해자의 고통 전시나 묘사보다 피해자 주변인의 연대를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함. 재현방식을 배우와 합의하고 배우가 안전하지 안전망이 있는지 토론하는 것이 중요함
- 재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가시화와 비가시화 사이에서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는 것이 여성 창작자들이 폭력에 대한 재현윤리 차원에서 연대. '재현'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문화예술이 연대의 유력한 방법이 매개일 것

■ 주요 발언 요약

① 발제1 <선택지를 넓히는 태도 -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 재현이라 일컫는 드라마극에서 텍스트에 폭력이 등장할 때 장면 속 중심 맥락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 고민. 누구의 시선인가, 혹 납득되지 않는 시선이라면 연습실 안에서 어떤 경로로 수정이 가능한지

토론하기도 함. 중심 맥락과 시선이 정리되면 무엇을 재현할지, 폭력인지, 고통인지, 구조인지를 고민. 이후 재현의 방식에서 배우는 안전한지, 혹은 안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거침

② 발제2 <여성 청소년 인물 재현에 관한 고민들>

- 스쿨 미투를 재현하면서 단순히 실제로 벌어진 일을 무대 위로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 재현을 통해 관객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중요한 고민이었음.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단체 위티 활동가를 인터뷰하고, 대본을 함께 읽고, 대본 속 여성 청소년 인물의 삶과 현실 속의 여성 청소년의 삶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토의하며 협업함. 작품 속에서 무엇을 재현하고 무엇을 재현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 신체적·언어적 성폭력 묘사는 양기로 함. 피해자 주변인의 연대를 더 가시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③ 발제3 <폭력의 재현에 관하여>

-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를 제작하며 아버지의 폭력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신체적·정서적인 폭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인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가시화와 비가시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함

④ 발제4 <다큐멘터리 재현의 윤리 - <이태원>을 중심으로>

- 실존하는 인물의 삶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연출자의 시선이 가진 한계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무거운 과제로 느껴짐. 특히 사회적 낙인을 가진 여성 출연자를 담을 때 작업이 낙인 효과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넘어 페미니스트의 방식으로 재현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⑤ 전체 토론

“가시화와 비가시화 사이에서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는 것이 여성 창작자들이 폭력의 재현윤리 차원에서 하는 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지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내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연대로의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창작자와 창작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은

“영화를 통해서 성산업에 종사했던 여성에 대한 낙인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은 믿음이 있었기에 연대의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강유가람

“<344명의 쌍년들>이라는 작품을 계기로 창작진들과 연대할 수 있었고 관객에게 연대가 되었느냐는 관객의 몫인 것 같은데 저는 되려 관객에게 연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강윤지

“예술 재현물들이 ‘예술성’이나 ‘사회운동과의 연대’의 가치를 지닌 창작물로서 인지되기보다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한 현실에서 나의 작업물이 연대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붙어 사는 삶이 무엇일지 상상하고 연습하며 실험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의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현’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문화예술이 연대의 유력한 방법이자 매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혜진

## 나. 제2회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세션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

<b>이슈1</b>	<b>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b>	<b>15:30~17:30</b>
<b>세션 12</b>	<p><b>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b></p> <p>사회 이진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p> <p>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조성 책무 이행 실태를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구축 중심으로 살펴보고, 예술현장의 성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p>	
<b>발제 1</b>	<p><b>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 심의 절차 안내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제언</b></p> <p>이은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평등팀, 변호사</p>	
<b>발제 2</b>	<p><b>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관련 성희롱·성폭력을 바라보는 예술위원회의 문제 인식</b></p> <p>이진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p>	
<b>발제 3</b>	<p><b>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자치규약을 통한 성폭력 사건 대응과 향후 과제</b></p> <p>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표</p>	
<b>토론</b>	<p>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을 변호사,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p> <p>최김하나(김하나)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인권전문관</p>	
<b>이슈1</b>	<b>세션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b>	<b>LIVE 제2회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b>









사회 | 이진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15:30~17:30
- 장소 : 온라인 줌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
- 목표

- 2018년 미투운동 이후부터 2020년 Y작가 성희롱 사건 처리를 거쳐 현재까지 예술위의 성폭력 사건 처리를 포함한 문화예술 공동체 성평등 문화 조성 책무 이행 실태를 현재까지 발표된 공식 입장 및 예술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하여 검토
-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정부 기관의 임직원 외 업무 관련인의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와 운영 경험을 통해 예술위의 책임과 가능성을 진단하도록 함
- 예술 현장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예술위의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구축이 필요한 이유와 성평등 논의의 방향 제시

■ 참여자(가나다순)

역할	참여자 및 소속
사회자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발제자	이은심(서울특별시 교육청 성평등팀, 변호사)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표)
토론자	문은영(법률사무소 문울 변호사, 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 )
	최김하나(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인권전문관)

■ 핵심 내용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사업은 예술위 소관이지만, 예술위 규정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이슈 처리 시 실효성이 있으려면 해당 개인/단체의 제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이 필요함. 또한 성평등센터 설립 추진을 고려할 필요
- 현재 예술위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술인 신문고나 국민권익위 등을 통해서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지만 이에 대한 조사 절차와 판단 원칙, 기준 부재함. 예술위는 법적 조사권, 판단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사건 조사와 판단 과정을 수사와 재판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인지 관점으로 조직 내 문화와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규정 마련을 위한 제 역할을 해야 함
- 예술인 개인이나 개별 단체가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이 처리될 때 가해 행위자가 프로젝트에서 하차하는 정도가 최대 제재임. 결국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가해 행위자와 마주칠 수 있어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 발생. 예술위 공식적인 조사와 사건처리 절차 등 제도적인 보완 방법들이 요구되는 이유임. 예술인 개인들이 아닌 예술현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적인 사건처리 제도 마련이 절실함
- 예술계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사전 조사권을 갖춘 그리고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확실히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기구를 만들어야 함
- 예술위가 인권경영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 규정 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제공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종사자들의 노동 형태 등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 대책과 대응 절차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 주요 발언 요약

❶ 발제 1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 심의 절차 안내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제언>

- 성희롱·성폭력을 처리하는 기관 내부 사건처리 절차는 대부분 기관에서 유사함. 합의 중재 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조사 신청 및 접수하는 경우가 있음.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폭력 처리 절차도 기관 내부 사건처리 절차와 유사하여, 성희롱 사안은 교내 처리절차에서는 사안 접수를 하고, 사안을 조사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는 절차로, 사법 처리 절차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경찰 수사 및 검찰 조사를 거친 후에 법원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함
- 기관 외부에서 성희롱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음. 기관 내부 절차와는 다르게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고 기관장에게 가해자를 징계하고 기관 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는 방식. 최근에는 많은 조직에서 성희롱 신고센터를, 특히 익명 신고센터도 새롭게 개설되는 추세
- 예술인 복지법 제3조 2항, 4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다룸. 규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성희롱·성폭력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의 법적 성격, 예술위와의 관계, 예술위에서 발생한 문화예술인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어야 함.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은 예술위 관할로 볼 수 있으나,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원 제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방안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다른 성격을 고려해야. 도제식으로 기술 등이 전수되고 오랜 기간 숙련을 거쳐서 정교화되는 분야의 경우 좁은 인맥으로 권위자에 의하여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특성이 있음.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하여 규제하거나 성평등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❷ 발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관련 성희롱·성폭력을 바라보는 예술위원회의 문제 인식 : 규정 제정 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2020년 Y작가 사건 이후 발표한 후속 조치 약속에서 ‘수사 기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력을 가지겠다, 가해자의 권력과 영향력 배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예술인으로서 복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현재 예술위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술인 신문고나 국민권익위 등을 통해서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지만 이에 대한 조사 절차와 판단 원칙, 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그리고 예술위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에 대한 행정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계속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상담 창구를 열어,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지원하고 권고하거나 징계하는 결정을 민간이 참여하는 과정과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함. 사례와 경험을 축적해 가며 사건처리에 대한 정책적인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TF와 현장의 지속적인 의견.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각서 등 지원금 교부 시 예술 현장에 요구하는 서약서가 있는데, 이 예술인 개인의 윤리성에 기대는 측면만이 아니라 예술위 역시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의 주체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현장들을 규율하는 형태로만 내용을 구성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현재 예술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유예하고 규정 마련을 지연하는 사유로 법적 조사권, 판단권 없음을 근거로 삼음. 법률 자문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자체 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측면보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개입 권한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함. 따라서 법률 자문의 결과는 행정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수. 그러나 현재 예술위는 근거와 절차 없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행정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원칙과 절차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기존 규정 TF에서 제안한 안에서의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인지 관점으로 조직 내 문화와 맥락을 파악하자는 취지임. 또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경우도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이미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진행하고 있음에도) 예술위는 이에 대한 낮은 이해로 법적 조사, 판단권 없음이란 주장을 반복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③ 발제 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자치규약을 통한 성폭력 사건 대응과 향후 과제>

- 각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한 현장, 성평등한 현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치규약을 만들고 있음. 이러한 자체 활동의 중요한 점은 예술 창작 과정이 윤리적일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추체가 예술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예술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자치규약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부분의 조항들을 예술계 내에서 재정립하고 논의하고 지정해 가는 과정들이 성희롱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해결의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는 과정이 되었음
- 단체나 프로젝트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사건이 처리될 때 가해 행위자가 프로젝트에서 하차하는 정도가 최대 제재임. 결국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가해 행위자와 마주칠 수 있어서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제도적인 보완 방법들이 요구되는 이유임
- 예술인 개인들이 성희롱 성폭력을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현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적인 사건처리 제도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함

### ④ 토론1 <영화인 신문고의 현재 시스템과 영화 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 문화예술계의 예술인과 영화산업 내에서 스태프의 처우라는 것이 매우 유사.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영화산업 내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을 조정하는 영화인 신문고 제도를 참고. 영화인 신문고는 민간기구로 정부의 공식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사정이 합의 하에 운영. 영화인 신문고는 노사정의 합의로 영화산업 내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법적 소송이나 다툼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적 에너지 소모를 방지함. 영화인 신문고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던 건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 올해에는 별도의 민간기구이지만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 사단법인화 추진. 고충처리부터 조사, 접수, 판단, 피해자 지원까지 가능한 상시적인 조직, 예산 인력이 중요함
- 문체부 산하의 위원회로 들어가 존재한다면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예술계에서 다양한 예술계를 대표하거나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받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의 기구로 만들어야 함. 조사권을 갖추고 가해자 제재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함.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성희롱·성폭력 근거 규정이 들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함. 그 대신 조사권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어야 함

### ⑤ 토론2 <‘인권경영지침’을 토대로 한 공공기관 인권침해 사안 대응의 방향성>

- 인권경영제도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발간해서 국내에 있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국내 대다수 공공기관들에서 인권경영체계를 도입 운영함
- 인권경영에서 핵심 요소 세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구제하는 것. 인권경영과 관련해서 예술위는 2014년에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 2015년에는 비전 어워드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부 부문 두 가지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수상. 이후 2017년도에 인권경영선언식을 통해서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하고 발표함. 이런 상황에서 보조사업 관련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일종의 사각지대로 예술위의 역할 수행이 필요
- 예술위가 인권경영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 규정 내에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제공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 않은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인권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술위가 기존의 법 체계나 제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넘어서 문화예술계의 특성,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 형태 등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 대책과 대응 절차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 다. 라운드테이블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화예술 생태계>

■ 일시 : 2022년 5월 9일(월) 14:00~17:00

■ 방식 : 온라인 줌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

■ 참여 패널

역할	참석자	주제
사회	이진희(예술위 7기 위원 겸 성평등소위 위원장,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발제	김지현(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관련 현황 분석
	이 산(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20·30대 여성예술인이 경험하는 예술계 불평등 구조
	백소망(창작음악그룹 아마씨 동인)	20·30대 여성예술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토론	신 재(제로셋 프로젝트 연출)	젠더관점으로 읽는 문화예술계 공공영역의 불평등
	송 원(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	지역 여성예술인이 경험하는 중첩된 불평등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예술위 성평등소위 위원)	문화예술생태계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가치
	정창호(예술위 정책혁신부장)	안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황지영(전주시 인권정책과 팀장)	직장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향

## ■ 배경 및 목표

- 2021년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연령·경력·지역 차별에 따른 예술계 진입 단계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과 진단 확산, 예술위의 역할 제안
- 지속가능한 예술계 환경 조성을 위해 20·30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와 지역 여성예술인들 활동 가치를 공유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생태계를 변화시킬 전략을 도출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외에도 예술 창작환경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예술위의 원칙과 제도 수립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성 강조

## ■ 주요 내용

### ① 발제 1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관련 현황 분석>

- 20·30대 여성 예술인의 고유하고 특수한 현실을 포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이에 기반하여 예술정책 프레임의 발전시켜나갈 필요.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관련 불평등 요소의 경우 여성 예술인의 전반적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함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20·30대 여성 예술인의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학생 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반면, 교원 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비전임 교원에서 전임교원으로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성별 격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 20·30대 여성예술인의 사회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예술계열 여성 졸업자가 남성 졸업자보다 30%나 높은 반면에 취업과 지원사업 선정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성별 격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이는 예술계 예비 여성 인력 중 취업 및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
- 예술 관련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성비를 살펴보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성별 불균형이 심화됨.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히 고위 직급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예술정책의 입안, 설계, 집행, 평가, 환류 시스템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불균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예술지원제도 측면에서는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계속 지원사업을 가져가는 구조로 파악됨
- 문화예술계는 도제식 구조이기 때문에, 성폭력 및 위계적 폭력 대처 및 해결 방안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동 분야 종사자에 더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주요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발제 2 <20·30대 여성예술인이 경험하는 예술계 불평등 구조>

- 도제식 교육 훈련 과정의 불평등 현실: 교육기관에서 기술 전수를 하는 데 내용과 무관하게 선생님이 권장하는 대로 수업에 참여해야 함.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어지는 활동에는 무급으로 참여, 경제적 곤란을 경험. 착취 구조뿐만 아니라 상납문화 존재
- 노동현장(활동현장)과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결: 네트워크(파벌)를 형성하며 폐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특성. 교수뿐만 아니라 선배들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위계 폭력, 무급노동이나 상납, 시중을 요구하는 등 착취, 성폭력, 성추행이 일어나지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
- 성역할 통념 강요: 20·30대 여성 예술인에 대해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동료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존재함

- 지원제도: 지역의 경우에는 소수 여성 단체가 독점하거나, 공모신청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사업의 주제나 내용면에서 지금 하는 활동과는 맞지 않고 선정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등 접근성이 떨어짐. 문화예술 공공영역, 공공지원기관에서 성폭력 대응이나 성인지적 관점의 사업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결국 여성 예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으로 갈수록 심화됨
-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 사회적 가치와 예술활동을 연결하여 이슈화, 전통적인 장르의 구획들을 탈피해서 융복합 장르 등 새로운 형식을 찾으면서 본인의 작품 세계, 예술 세계의 고유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유지. 수평적, 개방적인 팀 운영을 하면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나 희생이 있지 않도록 운영
- 향후 과제: 정책제안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2, 30대 여성 예술인 관련 데이터 및 통계 확보 필요. 지원사업 현장, 공공예술지원 현장에서 예술계의 위계 구조를 인식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의제들이 논의되어야 함. 자원과 기회가 누구의 관점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 예술 노동현장에서의 위계 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함. 예술 교육훈련 기관의 구조 개선도 필요함

### ③ 발제 3 <20-30대 여성예술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 30대 여성, 청년, 예술노동자의 고군분투 생존기: 청년예술가의 생존 문제에 있어 지원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임.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업의 형태에 맞춰서 지원서를 쓰느라 창작과 지원사업의 관계가 주객전도가 되거나, 거대 기획사가 특정 사업을 독점하거나, 경험이 많은 개인과 팀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등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함. 기관과 예술가가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보완해나갈 필요
- 청년 생존기(전통공연예술계 이야기): 강한 위계문화에서 탈피하거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창작에서 더 열린 가능성을 발견하여 창작의 세계를 '선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음. 청년 대상 지원사업이 많이 생긴 뒤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창작을 선택. 청년으로서 전통공연예술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동향을 잘 읽고 있어야 하고 예술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함. 방송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하기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나옴. 이 세계에서는 청년의 예술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좋은 학벌과 선생이 없으면 중심부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임.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통공연예술을 하는 청년들의 생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근대의 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창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부재한 상황.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함
- 그냥 존재하기: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의 이유가 많음. 부조리와 불공정, 성폭력의 문제로 비자발적으로 떠나간 피해자들도 있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생계의 문제로 떠나간 이들이 더 많아짐. 만 39세가 지나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적어지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 그때까지 이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음. 이 세계가 지금보다 건강해지기를, 많은 청년예술노동자들과 오래 존재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램

### ④ 토론

- 성평등으로 바꿀 생태계가 서울만을 한정 짓는 것은 아닌지, 이 논의가 더 확장되어 지역의 20-30대 여성 예술인에게 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여성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기구와 동료가 필요. 지역은 인맥 중심의 창작기회 제공으로 인해서 성평등에 대한 본인의 활동을

- 가시화할 수 없는 예술인이 많음. 결과적으로는 창작과정 안에서 부조리함을 묵인하거나 문제의 식조차 발화할 수 없는 고립된 구조를 만들
- 20·30대 여성 예술인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성폭력, 성차별구조, 불공정 사례는 여전히 지역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 교육 의무화 같은 방식의 안전고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함
  - 20·30대 여성, 청년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동료는 누구인가, 참조 집단은 누구인가? 문화예술 노동을 하는 20·30대 여성이 따로 있고 다른 사회활동이나 혹은 이런저런 대안적 사회를 위한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부장제 후기산업체제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차별받는 약자들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려는 노력을 해야함
  - 문화예술계 외부에 있는 20·30대 여성들과 내부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한국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내부도 한국 사회 전체에서는 외부임. 즉 내부에 있는 외부, 이방인의 자리임. 이방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음. 여성 청년 문화예술노동자는 다중적 정체성, 소속,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므로, 문제를 교차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자고 제안함
  - 지방의 경우 과도한 남성, 일류 학벌 출신,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이 대표성을 가지는 현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변방 중의 변방에 있는 20·30대 여성들, 청년들 혹은 여타의 문화적 변별성으로 인해서 소수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루어낼 수밖에 없음
  - 20·30대 여성 청년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중 언어자가 될 수밖에 없음. 기존의 언어로 설명과 설득, 협상을 계속하면서 전문가의 길에 들어서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언어를 선언해 나가야 함. 퀴어링하기 혹은 크리플링하기라는 예술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생명체들 혹은 사물들 혹은 기술들 간의 잇기, 다양한 망들을 만들기라는 식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 젠더, 연령, 몸 상태, 지역, 놀이, 교육, 테크놀로지, 자본, 윤리, 정치 등이 네트를 이루면서 만드는 복잡다단한 흐름과 망들의 이어짐 속에 문화예술 활동 혹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이 있음
  - 문화예술계, 이 계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깨닫고 자기반성과 내파를 촉구해야 함
  - 현실이 발휘하는 관행적 폭력과 위력을 상상력의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주류 기득권층이 사용하는 언어, 상징, 규범, 도구들, 이 기호체계를 우리가 잘 전유해서 다른 방식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다른 방식의 세계관을 열어 보여줘야 함
  - 신청부터 작품의 완성까지 지원사업 과정 전반에서 불평등한 구조 제거를 위한 정책적 대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심의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의과정 및 결과의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 지원사업 내 불평등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로 예술위에서 매년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시범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고려해볼 필요.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수반되어야 함
  - 조사 권한의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 부분이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예방을 위한 조사과정은 사법적인 과정과는 좀 다르게 조직의 문화에서 그리고 활동의 영역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그리고 차별적인 문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관과 기관장의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상담뿐만 아니라 조사 권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로 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30대 여성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평등한 예술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기관과 기관장이 해야 할 일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최소한의 제도적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권의 원칙 문제임

---

## IV . 성과와 전망

---

### 1. 활동 성과

#### ■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성평등 구조 체계화 기반 구축

- 제3기 성평등소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예술생태계의 성평등 구조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함
- 성희롱·성폭력 대응은 기존 예술계의 권력과 위계에 대한 성차별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재구성하려는 제도 안팎의 노력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예술생태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함께 살피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구조 구축의 중요한 이슈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마련이라는 시급성과 함께 본질적인 성평등 구조의 문제를 성차별적 예술 생태계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밝혀내려는 노력으로 예술위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성평등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 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제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파편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부 단위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 대응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체부 해당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와 보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함. 이처럼 필요한 성평등 이슈를 제도권 내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 제정 추진

- 7기 위원회 기간 동안 보조사업 내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했음
- 성평등지원 소위원회는 공론화된 성폭력 행위와 2차 피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지원 중지, 보조사업 선정 취소 등 예술위 의결을 통한 개별적인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사업 관련 제재 조치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초안으로서 처리 규정 제정을 촉구하였음
- 규정 제정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핵심사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예술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20-30대 여성예술인 예술계 진입구조의 불평등 구조 분석

- 젠더, 연령, 지역, 경력(경험) 등에서 여성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안하였음

■ 지역간담회를 통해 성평등 예술지원을 위한 현장 예술인들과의 소통과 의견 청취 노력

- 예술위 성희롱·성폭력 규정안 의결을 앞두고, 대구, 전주, 부산에서 지역문화재단 등 예술지원기관, 여성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정 보완 방향,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체감과 해결의 어려움, 예술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함

■ 아르고 대토론회, 라운드 테이블 등 공론화 작업을 통한 소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와 인식 확산

- 성평등소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성평등한 예술계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예술계와 교육계, 나아가 공공부문에서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음.
- 특히 지속가능한 예술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여성예술인들의 활동 가치를 공유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생태계를 변화시킬 필요성과 전략 등을 제시함

## 2. 전망과 과제

■ 성평등 관점의 정책 입안을 위한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과업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 제3기 성평등소위가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성평등 구축을 하나의 의제로 맥락화해온 성과를 기반으로 성평등한 예술지원을 위한 과업 설정과 실행이 필요함
- 다양한 위치와 정체성을 가진 예술인이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교육 의무화나 서약 등의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술 현장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지원사업 선정 쿼터제 및 소수자 이슈를 주제로 한 지원사업 설계 등의 적극적 조치가 요청되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필수
- 예술위 내부의 성평등 관점 확보를 위해 예술위원회의 연령 및 성별 균형과 사무처 관리자급 인사의 성별 균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성평등소위의 활동 성과가 정책으로 환류되는 안정적 구조 구축

- 성평등소위를 포함한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의 지속성·심화와 확장을 위해 소위 권한과 역할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함. 성평등은 특정 부서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므로 예술위 사업 전반에서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고, 성평등 의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고 책임질 상시기구가 필요함. 성평등 예술 생태계 구축이 예술위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때, 소위원회뿐 아니라 성평등한 관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구현과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젠더/인권담당관 등의 상근 전담인력과 주직 등 추진체계 신설이 시급함
- 연구와 현장소통을 통해 파악된 의제를 문화예술 정책 전반과 연동하기 위해 소관 부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제3기 성평등소위가 마련한 관점과 내용적 토대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

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추진해야 함

■ 20·30대 여성 예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 구조를 교차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 20·30대 여성 예술인이 겪는 문화예술계 내 불평등은 가시적·비가시적 자원의 부족과 협소하고 인맥 의존도가 높은 진입 경로를 이유로 의존과 충성을 강요한 중견 문화예술인의 비윤리적 관행과 분리할 수 없음. 지역과 계층 간의 격차, 예술적 성취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투여해야 하는 전문성 확보 경로, 체계적인 교습보다는 타고난 재능의 영향이 크다는 사회통념, 계보로 연결되는 폐쇄적인 관계망 등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 특정 집단에게는 유리하게, 특정 집단에게는 불리하게 작동되는 차별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의 내용이 현장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으로 공유·유통되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는 5월에 시작된 제3기 소위원회 활동 시기로 인해 연구 기간의 한계가 컸음. 예술 현장과 정책 분야의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충분한 연구 시간이 주어진다면 본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후속 연구가 가능하리라 기대함
- 청년 TF 논의가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연결된 바와 같이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평등 문화 확산 시범사업 추진 등 창작지원 사업에 성평등 의제를 부각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이 요망됨

■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과 현장 의견 수렴

- 2022년 신설된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에 따른 고충상담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안을 통해 해결하였으면 하는 사례 유형과 신고방해요인 등의 파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신설된 규정에 따른 사건처리과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한 예술인 신문고와 예술인보호관 등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발간, 지역순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사업과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